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526
----------	------

제출일자 : 2024. 6. 13.

제 출 자 : 달성군추



1. 제안사유

○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 하빈면 운동장 내 막구조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 등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기상여건의 제약 없는 비가림시설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 위 치 : 하빈면 현내리 93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주요시설 : 막구조물 1식(1,518.3㎡), 야외무대 1식(40.5㎡)
- 총사업비 : 12.95억원 (전액군비)
 - 공사비 12억, 설계비 0.6억, 감리비 0.21억, 기타 0.14억

※기준가격(대장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1,295,000,000원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4. 02. : 사업계획 수립
- 2024. 05. : 설계용역 완료

- 2024. 07. : 착공(예정)
- 2024. 12. : 준공(예정)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분	당			금회			계			비고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계				1 (2)	1,558.8	1,295,000	1 (2)	1,558.8	1,295,000	
1.매입	토지									
	건물			-	-	-	-	-	-	
2.교환	토지			-	-	-	-	-	-	
	건물			-	-	-	-	-	-	
3.기타	토지			-	-	-	-	-	-	
	건물			1 (2)	1,558.8	1,295,000	1 (2)	1,558.8	1,295,000	신축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종 류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건물	유지	체육 용지	하빈면	현내리	933-5번 지 일원	1,518.3	1,518.3	2024.12.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막구 조물
						40.5	40.5					야외 무대

위치도 및 조감도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933-5번지 일원



□ 조감도



막구조물



야외무대

현 장 사 진

【하빈면 탁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933-5번지 일원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